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22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신장식 · 김선민 · 강경숙
김재원 · 김준형 · 박은정
백선희 · 정춘생 · 차규근
황운하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2일 임명된 이후 약 70여 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한편 8월 20일 기준 이종호, 김예성, 이일준, 이응근, 윤영호, 이성재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와 신규 수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파견 공무원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수사와 재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검사보의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를 80명에서 120명 이내로 증원하며,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완결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제7조 및 제9조).

아울러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하고,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가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또한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은 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 및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단서 중 “40명”을 “60명”으로, “80명”을 “120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4명을”을 “6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8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90일”을 “180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감사의 수는 <u>40명</u>, 파견감을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u>80명</u> 이내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감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8명의 특별감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감사보로 임명할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60명</u>----- -----<u>120명</u>-----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 ----- ----- ----- ----- ----- ----- -----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
5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
명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9조(수사기간 등) ① (생략)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
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
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신설>

-----6명을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100명-----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80일-----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수사
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

<u><신 설></u>	<u>혀 선고한다.</u> <u>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u> <u>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u> <u>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u> <u>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u> <u>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u> <u>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u>
--------------------	--